

<1주차 2교시(경찰행정법 개설)>

- 제1절 경찰의 개념의 연혁

1. 우리나라
2. 대륙법계
 - 시대별 구분
3. 영미법계

- 제2절 경찰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1) 사법경찰과의 구별
 - 2) 행정경찰 개념적 특징

제1장 경찰의 개념 : 역사적으로 발전 형성된 개념

제1절 경찰개념의 연혁

1. 우리나라 : '경찰'용어 처음 등장 - 1894(고종31년) 중추원 신관제, 1895년 내무관제 : 영어 및 불어 Police와 독어 polizei 번역어

2. 대륙법계

시대	내용	비고
고대의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의 어원 : 라틴어 politia •국가의 모든 작용(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 의미 	경찰과 행정의 미분화
중세의 경찰 (15 -16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의 경찰 용어가 독일에 계수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1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래 경찰개념에서 외정, 군정, 재정 및 사법이 분리, 내무행정(일반행정)을 의미 	
절대주의적 경찰 국가(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권은 군주가 갖는 절대적 국가권력(사회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해 봉건영주가 행사하는 특별한 통치권한) 총칭. •소극적인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 증진 위해서도 강제력 행사 - 경찰권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가 됨 	이런 연유로 절대주의 국가를 '경찰국가'라 함

<p>근대자유주의적 법치국가(18·19 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몽철학,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프랑스 대혁명 영향으로 법치주의가 성립 · 경찰분야에서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 1882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이 경찰개념 변화에 중대한 역할 : 프로이센의 고도인 베를린 크로이쯔베르크라는 지역 전승기념비의 전망확보 위해 일정 지역 건축의 고도제한을 하는 경찰명령에 대해, 프로이센 고등행정재판소는 1882.6.14 경찰권은 소극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만을 할 수 있다고 선언 	<p>경찰과 행정의 분화</p>
<p>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방지의 이름하에 행해지던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보안경찰외 협의의 행정경찰인 위·생건·축경제경찰 등이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 · 보안경찰 :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위험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찰 	

3. 영·미 법계(자치권) 국가의 경찰개념

(1) 경찰개념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과 합의에 의해 자기들을 방위하기 위해서 결성한 것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 시민권과 경찰권의 대립관계에서 형성된 것과 대비

(2)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문제로 논의.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 라 할 수 있음.

(3) 경찰을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문제해결자로 봄으로써 기능과 기술, 봉사와 협력요인을 강조

제2절 경찰의 개념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근대국가에서의 경찰개념,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은 반드시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각국의 경찰제도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혼재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작용을 의미. 여기에는 실질적 경찰 외에 사법경찰(수사경찰)이 포함

2.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위험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의 고권적 활동)' 을 의미

(2) ' 행정경찰'이라고도 하며, 경찰행정법에서 '경찰' 이란 이 행정경찰 의미.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보안경찰'과 '협회의 행정경찰' 로 나뉘어짐

가) 보안경찰 :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행정경찰과 같이, 다른 종류의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하는 행정경찰. 교통경찰, 해양경찰, 풍속경찰 등

나) 협회의 행정경찰 : 다른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부수적으로 행하는 행정경찰. 소방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국립공원경찰, 철도경찰, 관세경찰 등

*보안경찰과 협회의 행정경찰은 작용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동일한 법리(경찰행정의 법리)에 구속. 다만 수행기관의 차이 등이 존재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

5살 조카 폭행·방치 숨지게 한 40대 고모 긴급체포

연합뉴스TV | ▶ 1,785

2022-02-14 18:29:49



▶ 🔊 00:00 | 00:41

자막 ^ 자동 ^ ↗

구분	행정경찰	사법경찰
목적	공공질서에 대한 모든 혼란의 억제와 예방조치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하여 범죄자를 추적, 체포
성질	행정작용	사법작용
	사전적, 예방적 작용	사후적, 제재적 작용
구별실익	행정법 원리, 행정소송	소송법 원리, 소송법 절차
구별 기준	교통정리 : 행정경찰	범칙금 부과 : 사법경찰
	질서침해방지 차원 음란물 압수 : 행정경찰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 차원의 음란물 압수 : 사법경찰

(4) 행정경찰의 개념상 특징

- 가) 경찰의 목적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지
- 나) 경찰의 수단 : 권력으로 개인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을 그 주된 수단. 비권력적 수단도 사용(행정지도 등)
- 다) 경찰권의 기초 : 국가의 일반통치권. 통치권은 국민과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최고권력

제3절 경찰의 종류

(1)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경찰권 발동 시점 기준 분류)

가) 예방경찰 : 경찰상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으로 발동되는 경찰작용(예 : 경찰의 방범활동). 예방은 손해가 발생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단계에서부터 대처하고 그를 통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권리 영역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진압경찰 : 이미 발생한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예 : 폭동진압, 인질구출). 진압경찰은 사법경찰인 경우(예 : 범인체포)도 있고, 행정경찰인 경우(예 : 교통사고의 수습)도 있음

(2)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

가) 평시경찰 : 일반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따라 평시에 행하는 경찰작용(경직법 제2조 각 호에 나오는 경찰임무 수행 작용)

나) 비상경찰 : 전시나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비상시에 군대가 행하는 경찰작용(예 :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이 경찰사무 집행)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른 분류)

가) 국가경찰 : 국가에 속해 있는 경찰

나) 자치경찰 :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찰

다) 우리나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 체제. 예외적으로 제주 자치경찰은 별도로 존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질서경찰과 봉사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기준 분류)

가) 질서경찰 : 보통경찰조직의 직무범위 중에서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활동(범죄수사·진압, 즉시강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나) 봉사경찰 : 강제력이 아닌 서비·스계·몽지도 등을 통하여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생활안전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의 제공, 생활안전순찰, 수난구호 등)